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개정사항 도출

차용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e-mail : ywcha@kict.re.kr

Identifying the Revision Factors for the Construction Post-Evaluation Manual

Yongwoon Cha

Post Construction Evaluation & Mgmt. Center, Dep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요약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후평가 수행주체인 발주청 담당자의 지원을 위하여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현황 분석”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과 부문별(시설물별) 예비타당성 지침 등이 개정되었으나, 매뉴얼은 2015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7가지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시행지침 개정고시 반영과 부문별 예비타당성 지침의 세부내용 반영, 그리고 매뉴얼의 구성 개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토대로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발주청 담당자의 업무효율과 사후평가 활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현황 분석

1. 서론

2000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일환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사후평가 시행지침,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승격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후평가 수행주체인 발주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건설사업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을 최초 배포하였다. 이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해설 및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매뉴얼)」을 2013년 12월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4년 사후평가 대상사업이 50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선 두 개 매뉴얼을 통합하여 2015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최근 배포된 매뉴얼에는 2015년 8월 시점의 사후평가 시행지침 내용과 수요, B/C와 관련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지침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은 지속 개선되었으나 해당 매뉴얼은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발주청 담당자의 사후평가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 사후평가를 수행하게 되어있음에도 발주청에서는 제도의 이해 부족,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사후평가 미수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년에 배포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에 배포된 매뉴얼이 가장 최신판이다. 2015년 이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과 시행지침 내 사업수행 성과평가 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개선이 된바 있다. 또한 매뉴얼 곳곳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지침 및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매뉴얼의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개선사항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매뉴얼의 구성을 살펴보면 1장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해설, 2장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 3장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1년 사후평가 전담기관의 운영과 함께 동년 7월 시행지침이 개정고시 되었다. 해당 고시에서는 전문관리기관의 정의, 사후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공단계 공사비·공사기간 변경요인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다.

2장의 경우 시행지침에 각종 성과지표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해설을 하고 있다. 특히, 15년 기준 시행지침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의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21년 개정 시, 공사비, 공사기간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 추가로 수요예측과 B/C 내용에서는 2008년 도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2001 공

항, 항만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인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8년 이후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I PIMAC에서는 2021년도에 도로·철도 예타지침 개정안을 배포하였고, 시설물 별도로 2008년 이후에 지침들이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신규 유사사업 적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공종별, 단계별(타당성, 설계, 시공, 유관리)로 평가 항목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활용방안에서는 해당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서술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매뉴얼 개정사항 도출

앞서 매뉴얼의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시행지침의 해설이 핵심인 1장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장의 경우 시행지침과 연결되는 부분의 인용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예타 정의 및 목적, 예타 대상 사업 및 제외 대상, 부문별 수요 및 편익 방법론에 대한 사항들,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사항들의 반영이 요구된다. 3장의 경우는 실제 유사사업에서 사후평가를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 내용들이 필요하다. 특히, 단계별로 성과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성공사례들에 대한 발굴과 내용들을 언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의 구성과 관련하여 발주청 담당자 2인

[표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장	주요내용	개정사항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1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2021.7.30.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2020.6.9.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국가재정법 제38조<2020.6.9. 개정>
	수요예측제조사 및 타당성제조사	총사업비의 관리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국가재정법 제50조 <2020.6.9.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020.12.8.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2020.7.1. 개정>
2장	수요평가 및 기대효과 평가(B/C 분석)	KDI PIMAC의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내용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2021.5.>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14.12>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014.12>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15.12>
3장	활용가이드라인	단계별, 성과지표별 성과향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서술	단계별, 성과지표별 Best Practice 및 관련 연구문헌
공통	사용자 친화적인 구성	분량 및 내용 축소 검토	기타 유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검토
		시인성 개선 필요	

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은 전술한 내용과 동일하였다. 다만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첫째, 매뉴얼이 자세한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분량이 많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점과, 둘째, 텍스트가 많아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정착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정사항을 토대로 매뉴얼 최신판을 금년중에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발주청 담당자의 사후평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후평가의 활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2년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 “건설사업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2009년
- [2]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해설 및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 2013년
- [3]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 가이드라인”, 2015년